



본 책자는 산림보존에 기여하며, 환경보호 단체가 추천하는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KOREA AGGREGATES FINANCIAL COOPERATIVE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7층(송파동, 골재회관) www.aak.or.kr/kafc
TEL 02-470-0160 FAX 02-477-7086

차량 이용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송파동 20-6)

지하철 이용 지하철 8호선, 9호선 석촌역 2번출구(도보250m)

버스 이용 간선340번, 지선3318번, 일반30번 이용(송파여성문화회관 하차)



01

PARTNERSHIP

골재산업의 성공적인 파트너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고객과 함께 미래의 성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골재회관 안내

AGGREGATE HALL INFORMATION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7층(송파동, 골재회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0-6)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945.62㎡

층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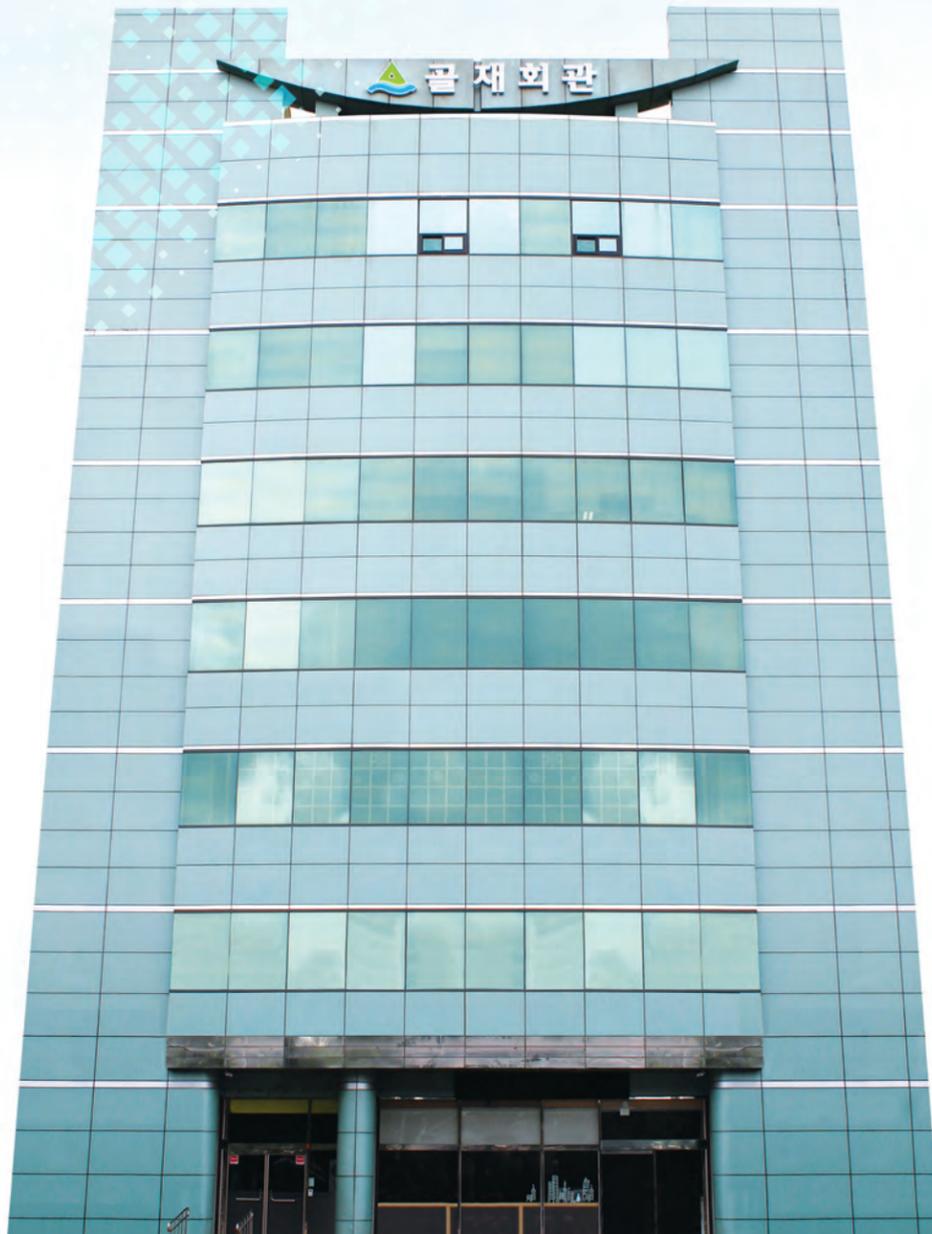
FLOOR MAP

6F, 7F 협회 및 공제조합

5F 한국골재산업연구원

1F, 2F, 3F, 4F 업무시설

B1, B2 주차장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Korea Aggregates Financial Cooperative

설립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 및 용자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근거 골재채취법 제38조(협회의 설립) 및 제40조(공제사업)

연혁



주요사업

MAIN BUSINESS

- 조합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인허가보증 등 보증사업
- 조합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조합원의 골재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 받은 토지 등의 복구대행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조합원의 권익향상 또는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나 출연
- 조합 재산의 임대 등 부대사업
-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제도개선 사업
 - 석재산업 활성화 관련
 - 능선너머 채취 관련
 - 사후 환경영향조사 관련

공제조합 이용절차

PROCESS USING



02

RATIONALITY

고객이 만족하는 조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조합!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이 고객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조합가입 안내

JOIN INFORMATION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에 필요한 최소 출자금 **13,200** 천원

1좌당 금액(액면가) 1,238천원 최소출자좌수 10좌
1좌당 지분가(23.1.1 현재) 1,320,000원(액면가 1,238천원 대비 6.5% ↑)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01 수중골재채취업 02 바다골재채취업 03 산림골재채취업
04 육상골재채취업 05 골재선별파쇄업 06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신용평가업무

ASSESSMENT WORK

신용평가의 의의

조합원의 재무상태와 골재 채취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정된 신용등급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 거래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평가의 원칙

신용평가는 조합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금융기관 등 외부공개 자료, 출자금을 비롯한 공제조합 내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용평가 등급

총 10단계 등급으로 분류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신용평가결과 활용

조합원이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때에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수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약정체결

CONTRACT CONCLUSION

약정의 의의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용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약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마다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조합원이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금액을 한도로 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때에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인허가보증, 단지관리비납부이행보증, 공유수면점·사용료이행보증, 전기요금납부 이행보증 등은 반드시 개별거래용 보증 채무약정에 의함





03

ONLY ONE

오직 하나뿐인 골재보증전문기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공제조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증업무

GUARANTEE WORK

보증대상

- 조합원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조합원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사업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 골재선별·파쇄업 영위에 필요한 복구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보증한도 계산방법

보증한도 = 출자좌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보증배수 × 지분가(1,320,000원)
 <예시> 100좌 출자한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와 인허가보증한도

- 총 보증한도(신용평가A인 경우)
2,772,000,000원(=100좌 × 1,320,000원 × 21배)
- 인허가보증한도(신용평가A인 경우)
1,584,000,000원(=100좌 × 1,320,000원 × 12배)

주요 보증한도

구분	지급보증		일반보증		
	인허가	단지 관리비	계약	입찰	하자 보수
보증배수	최대 15배	최대 15배	최대 11배	최대 7배	최대 4배

* 총보증한도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의 최대26배

보증수수료

구분	지급보증		일반보증		
	인허가	단지 관리비	계약	입찰	하자 보수
보증 수수료율	연 0.4~0.6%	연 0.6%	연 0.6%	건당 0.03%	연 0.6%

* 고객보증수수료 추가할인 적용

융자업무

FINANCING WORK

융자가능 금액

- 융자 대상 : 100좌 이상 출자한 조합원
- 융자 한도 : 출자 지분가의 20% 이내 (신용운영자금)
- 이율 : 연3.0%(선취)

보상업무

INDEMNIFICATION WORK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는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보증 약관에 의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공제조합 보증 관련 근거법령

GROUNDS LEGISLATION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0조

공제조합 이용시 유익한점

BENEFICIAL

- 신속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로 조합 이용이 편리합니다.(ONE STOP 업무처리)
- 적은 출자금액으로 조합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타보증기관에 비해 보증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조합원 여러분의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지분가 인상)

- 조합가입과 동시에 한국골재협회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협회소식지 등 골재산업의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합 이용에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ak.or.kr/kaic)를 참고하시거나 Tel. 02-470-01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